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해수욕장 안에 장기간 텐트,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함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해수욕장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등을 직접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143호, 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물건등의 종류를 명시하고,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 안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의 종류 명시
(안 제10조 신설)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제거 가능한 “물건등”에는 알박기 텐트, 캠핑카 등 캠핑과 관련있는 ① 야영용품, ② 취사용품,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물, ④ 그 밖에 해수욕장 관리청이 이용객들의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하는 물건등으로 명시함

나.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해수욕장 관리청이 물건등을 제거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알 수 있도록 통지 및 공고, 물건등의 반환 및 처리 비용 징수 등 처분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설치·방치된 물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안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야영용품
2. 취사용품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리청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하는 물건

제10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때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물건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고, 제거된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별로 품명·수량·방치장소·제거일시·보관장소 등을 기록해야 한다.

- ②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물건등을 제거한 사실 및 관리청에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인임을 통지할 것과 그 물건등을 찾아갈 것 등에 관한 안내문(이하 “제거사실 및 안내문”이라 한다)을 통보해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리청의 게시판에 1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해도 제거된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건등을 찾으려는 때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물건등의 제거·운반·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경과해도 그 물건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등을 처분하여 제거비용 및 그 관련 부대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해당 관리청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각각 귀속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건등의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관리청에 귀속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거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절차 및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설치·방치된 물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안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야영용품		
		2. 취사용품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리청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하는 물건		
<u><신 설></u>		제10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때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물건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고, 제거된 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별로 품명·수량·방치장소·제거일시·보관장소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물건등을 제거한 사실 및 관리청에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인임을 통지할 것과 그 물건등을 찾아갈 것 등에 관한 안내문(이하 “제거사실 및 안내문”이라 한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관리청1은 제2항에 따른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리청의 게시판에 1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해도 제거된 물건등을 찾아 가지 않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건 등을 찾으려는 때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물건등의 제거·운반·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경과해도 그 물건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등을 처분하여
제거비용 및 그 관련 부대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소
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해당 관리청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각각 귀속한다. 다만, 제4항 단
서에 해당되는 물건등의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처
분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관리청에 귀속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제거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절차 및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연 락 처	(044) 200 - 5253